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60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 권칠승·이병진·홍기원

박지원ㆍ허 영ㆍ윤종군

김준혁 · 손명수 · 전용기

박범계 • 차지호 의위

(11인)

제안이유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률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상의 법률사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유상으로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법률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가운데 일부 법률서비스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단체 사이에 「변호사법」위반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리걸테크를 통하여 법률소비자에게 폭넓은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직무가 가지는 전문성과법률서비스의 공공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자격과 리걸테크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리걸테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리 걸테크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국민 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고, 법률분야종사자와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등간의 상생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리걸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리걸테크산업육성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 마.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0조).
- 바.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는 리걸테크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3조).
- 사. 법률분야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아.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산업을 진흥하고, 리걸테크서비스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리걸테크"란 인공지능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법률분야종사자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거나 법률분야종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 2. "리걸테크서비스"란 리걸테크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법률 분야의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학력, 경력, 업무실적 등 법률분야종사자에 관한 정보제공
 - 나. 자동화된 법률 자문
 - 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률을 적용한 결과의 예측
 - 라. 자동화된 법률 문서 작성수단의 제공

- 마. 법령, 판례, 주석 등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바. 논문, 보고서,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 법률자료의 제공
- 3. "리걸테크산업"이란 리걸테크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4.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란 리걸테크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5. "법률분야종사자"란 법률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세무사, 채권추심업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법률분야종사자와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리걸테크 산업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리걸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 리걸테크서 비스사업자의 자격 및 제공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 등에 관하 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리걸테크산업 육성 등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 · 진흥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 2.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3. 리걸테크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4.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리걸테크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리걸테크 산업 육성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리걸테크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① 정부는 리걸테크산업 육성기 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리걸테크 관련 시설,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 2.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의 확보 및 공개·가공·유통
- 3. 리걸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연수
- 4.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 5. 리걸테크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 · 분석 및 유통
- 6. 그 밖에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정부는 법령·판례 등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기술개발 등) ① 정부는 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1. 제6조제1항에 따른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 2. 제7조제1항의 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개발
 - 3.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로서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 4. 그 밖에 리걸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9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법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6조제1항에 따른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
 - 2. 제7조제1항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 3.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로서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제3장 리걸테크서비스의 제공 등

- 제10조(허가) 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 2. 변호사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의 보유
 - 3. 그 밖에 리걸테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허가의 취소)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법률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3조(피해보상보험 계약) 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리걸테크서 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는 리걸테크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이 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은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법률분야종사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 법률분야종사자를 대상으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리걸테크 서비스사업자는 법률분야종사자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15조(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 ① 법률 분야종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하 "일반인"이라 한 다)을 대상으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리걸테크서비스 사업자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

공할 수 있다. 단,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는 제2조제2호 가목, 나목, 라목, 마목 및 바목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는 일반인의 법률적 수요 를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유상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인에 대하여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분야종 사자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 및 시정조치

- 제16조(감독)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7조(시정조치)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1.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3조에서 정하는 피해보상보험계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3. 그 밖에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가 그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8조(영업의 정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가 다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2.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3.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청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2조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의 허가의 취소
 - 2. 제18조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

제5장 벌칙

-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

된 경우를 포함한다)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3.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 2.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 ②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